



제330회 임시회
2014. 6. 11.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최미애 의원 외 6명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4년 6월 2일
- 회부일자 : 2014년 6월 5일

3.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現 안전행정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조례 통합 권고(2012. 4. 2)에 따라 기존 조례를 통합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4. 주요내용

가.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안 제2조)

- 「국적법」 제3조에 따른 인지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가족 범위에 포함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계획 포함 내용 : 지원 목표·비전, 시책, 재원확보, 협력체계 구축 등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 설치(안 제8조부터 제14조)

- 구성 : 15명 이내 위원(당연직, 위촉직), 위원장(행정부지사)
- 기능 : 지원계획 심의, 지원사업에 대한 상호협력 등

마.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무 협의회” 설치(안 제15조부터 제17조)

- 구성 : 15명 이내 위원(유관기관 실무부서장 또는 업무담당자), 위원장(여성정책관)
- 기능 : 지원사업 등에 대한 업무 공유 및 협의

- 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 거주 지역의 연차적 환경 개선 사업 계획 및 추진(안 제18조)
- 사. 외국인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및 업무위탁(안 제19, 20조)
- 아. 세계인의 날(5.20), 세계인 주간(1주) 설정 및 행사실시(안 제23조)
- 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을 명예도민으로 예우(안 제25조)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행정과의 ‘외국인 주민업무’가 당시 여성 정책과(現 여성정책관실)로 이관(2011. 3. 25)되어 기능이 유사한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와 함께 단일부서에서 통합 관리되는 상황임에도, 「충청북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와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적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기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문구를 적절하게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조에서는, 「국적법」 제3조에 따른 인지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다문화 가족 범위에 확대, 포함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설치,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15조부터 제17조에서는 행정협의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무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3조에서는 매년 5월 20일을 “충청북도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안 제25조에서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을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부칙으로, 기존의 「충청북도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와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폐지토록 함.